의안번호	제 호
의결 연월일	2018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부겸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8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의 한시적 조직특례 연장(안 별표 3 제2호 비고 제6호)

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이루어진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후 8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3·4급 정원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4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및 행정규제 등 협의・진행중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 비고 제6호의 후단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,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4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”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	
연 락 처	(02) 2100 - 3808